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P&B Policy & Business Report

P&B Report는 대한민국 로펌 최초로 발간하는 입법 정보 전문지입니다.
의안 원문,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국회 회의록 등 국회 공식 자료만을 활용해
정확하고 객관적인 입법 정보를 매월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는
국회 입법정보전문지 P&BReport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lc@draju.com으로 문의바랍니다.

P&B Report

구성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률안 목록을 소관 위원회별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주요 법률안 소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상정된 법률안 중 기업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을 엄선해 관련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제안자: 법률안 제안 주체(국회의원의 경우 전체 명단과 소속 정당)를 소개합니다.
- 심사진행경과: 법률안 심사 전 과정을 접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5단계로 나누어 소개합니다.
- 제안이유/주요내용: 제안자가 법률안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주요발언: 국회의원, 전문위원, 정부관계자 및 기타참석자가 국회의회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해 논의한 공식 회의록에서 유의미한 발언을 발췌해 제공합니다.



법률안 비교·분석

주요 법률안과 유사한 내용의 의원안이 다수 계류된 경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을 활용해 현행법과 의원안을 비교·분석하여 쟁점별로 타당성과 문제점을 소개합니다.



신규 상정 법률안 목록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에 상정된 법률안 가운데 이달에 처음 상정된 법률안을 별도로 소개합니다.



국회 일정표

매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국회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의사일정을 위원회별, 날짜별로 구분해 소개합니다.

Contents

I.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집	06	1. 구성
	08	2. 관련법령

II.

발의	12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법제사법위원회
	25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6	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27	3)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0	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1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4	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35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6	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7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8	11)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9	1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1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1	14)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42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3 1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44 17)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 46 1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7 19)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 48 20)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 49 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51 2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 52 23)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53 24)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III.

소위원회	56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국토교통위원회
	57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IV.

상임위원회	62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65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67	2)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70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73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74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79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V.

본회의	84	1.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85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90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I.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위원회

1. 구성
2. 관련법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정수 30 현원 30 더불어민주당 17 국민의힘 11 비교섭단체 2



위원장
이철규

선거구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정당 국민의힘
당선횟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원이

전남 목포시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곽상언

서울 종로구
초선(제22대)



위원
권향엽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
초선(제22대)



위원
김교흥

인천 서구갑
3선(제17대, 제21대, 제22대)



위원
김동아

서울 서대문구갑
초선(제22대)



위원
김성환

서울 노원구를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김정호

경남 김해시을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위원
김한규

제주 제주시을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박지혜

경기 의정부시갑
초선(제22대)



위원
송재봉

충북 청주시청원구
초선(제22대)



위원
오세희

비례대표
초선(제22대)



위원
이연주

경기 용인시정
3선(제19대, 제20대, 제22대)



위원
이재관

충남 천안시을
초선(제22대)



위원
장철민

대전 동구
재선(제21대, 제22대)



위원
정진욱

광주 동구남구갑
초선(제22대)



위원
허성무

경남 창원시성산구
초선(제22대)



위원
허종식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재선(제21대, 제22대)


국민의힘

 <p>간사 박성민 울산 중구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강승규 충남 홍성군예산군 재선(제18대, 제22대)</p>	 <p>위원 고동진 서울 강남구병 초선(제22대)</p>
 <p>위원 김성원 경기 동두천시양주시연천구를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나경원 서울 동작구를 5선(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2대)</p>	 <p>위원 박상웅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초선(제22대)</p>
 <p>위원 박형수 경북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서일준 경남 거제시 재선(제21대, 제22대)</p>	 <p>위원 이종배 충북 충주시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p>위원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6선(제17대, 제18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p>		

조국혁신당

 <p>위원 서왕진 비례대표 초선(제22대)</p>

새로운미래

 <p>위원 김종민 세종특별자치시갑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p>

소관기관

정부기관 (3)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기업 (17)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전KDN
	한전KPS
한국가스기술공사	
강원랜드	
한국광해광업공단	

준정부기관 (19)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석유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창업진흥원

기타 공공기관 (21)	한전원자력연료
	한전 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에너지재단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공영협소평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한전엠씨에스(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3	계량에 관한 법률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5	광산안전법
	6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7	광업법
	8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0	국가표준기본법
	1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12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13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1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15	노후거점산업단지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16	대외무역법
	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18	대한석탄공사법
	19	도시가스사업법
	20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21	무역보험법
	22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2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2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25	방위사업법
	26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27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28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30	산업디자인진흥법
	31	산업발전법
	32	산업융합촉진법
	3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34	산업표준화법
	35	상공회의소법
	36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37	석탄산업법
	38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3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4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문	번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41	송유관 안전관리법
	4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4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4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46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47	에너지법
	48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4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50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5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52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53	외국인투자촉진법
	54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55	유통산업발전법
	56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5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59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60	전기공사공제조합법
	61	전기공사법
	62	전기사업법
	63	전기안전관리법
	6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65	전력기술관리법
	66	전시산업발전법
	67	전원개발촉진법
	68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69	제품안전기본법
	7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72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73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7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75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76	집단에너지사업법
	7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78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79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80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81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82	한국가스공사법
	83	한국광해광업공단법
	84	한국석유공사법
	85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86	한국전력공사법

에너지·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법률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특집

부문	번호	소관법률
산업통상자원부	87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8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8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90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91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9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93	환경친화적 자동차 법
	94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95	산업디지털전환촉진법
	96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1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2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4	기술보증기금법
	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6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1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12	소상공인기본법
	1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1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16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17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18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19	중소기업기본법
	2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25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2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27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특허청	1	디자인보호법
	2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3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	발명진흥법
	5	변리사법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7	상표법
	8	실용신안법
	9	특허법



II. 발의

1. 발의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발의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회의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7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제사법위원회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익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명품백 수수사건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직무유기 의혹 및 김건희와 윤석열 대통령의 뇌물 수수 등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3	대통령 윤석열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14	리걸테크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1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18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1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2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법제사법위원회		33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4	순직 해병 수사 외압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범피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5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외국대리인 등록에 관한 법률안
		3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0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4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과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및 여론 조작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4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인회계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의 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안
		1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정무위원회	○	29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3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3	이행강제금 규정 정비를 위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3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3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	3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3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1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안
		4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4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8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한국은행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1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18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위원회		1	경상북도 국립대학교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교육위원회		9	국립공주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1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동북아역사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	
		1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5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7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	
		3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34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5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	
		3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무위원후보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인사청문요청안
			5	디지털포용 증진법안
			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7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O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7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6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8	한·아프리카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1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법안
		3	국방안전기본법안
		4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8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1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행정안전위원회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3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
		4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
		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지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
		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행정안전위원회		21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9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40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지방의회법안
		5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58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60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6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5	트레시 자치권 보장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66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6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5	국민체력 기본법안
		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9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1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6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4	공공건축물의 목재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13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1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1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수산중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정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9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	
		40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42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43	피해정후견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4	피후견인 결정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46	한우산업지원법안	
		4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8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49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0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5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7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O	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특집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O	6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O	10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O	1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특별지원법안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3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O	2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회		1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
			2	간호법안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보건복지위원회		1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4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15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1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	
		25	소아·청소년·청년 당뇨병 환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2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7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3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9	장애인권리보장법안	
		4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42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4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7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9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1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환경노동위원회		6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인사청문요청안	
		11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1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6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5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3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	
		O	3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37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1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39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고용보험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0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42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5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O	3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등 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6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8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9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10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13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1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7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1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1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22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3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24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O	32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8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O	3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43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44	주택도시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중소형드론의 안전관리 및 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47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9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5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51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5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53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54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55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안
		5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5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1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가족위원회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71호



김 현 정

선 거 구 경기 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5.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이사가 회사에는 영향이 없지만 주주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주주간에 부(富)의 이전이 일어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이는 주주간의 문제일뿐 이사는 주주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손해를 입은 주주들이 손해회복을 위한 구제수단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또한 최근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없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만으로 결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면책을 줌으로써 소수주주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 382조의3, 안 제401조 및 안 제401조의2).

우원회특집
산업금융시장원중소벤처기업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의폐의

2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47호



박 상 혁

선 거 구 경기 김포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회사의 이사에게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충실의무를 부여하면서도 그 대상을 회사에 국한하고 있어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유인이 부족한 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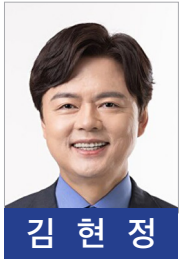
이에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고, 나아가 회사의 합병 등에 있어 불공정한 합병비율 등으로 주주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이사에 합병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82조의3 등).

3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94호



김 현 정

선 거 구 경기 평택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6. 제안

제안이유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됨.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됨.

디지털 경제 혁신을 이끌어가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가 강화하고 있는 반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가 10년전보다 7.7배인 230조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도 판매대금 정산주기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있는 것을 비롯해 입점 판매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최근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들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에 이은 기업회생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티메프 사태는 더 이상 입점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있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약과 같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날로 몸집을 불려가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에 의한 갑질과 불공정 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과 장치가 허술한 상태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납품업자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명시하고 있으나 온라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지급기한은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음.

미정산액이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우려를 받고 있는 티메프사태는 6만명에 이르는 입점 판매자들의 연쇄 도산을 부추기고 있음. 뿐만 아니라 5,600억원에 이르는 정부의 긴급 자금 투입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고 있는 실정임.

특히 독과점을 통한 시장지배력 확대에만 몰두하는 온라인 플랫폼간 출혈경쟁이 이번 티메프 사태의 주된 원인으로 거론됨.

이에 따라 판매대금 지급기한 설정 등 온라인 전자상거래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티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와 절차규정을 마

련하고자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입점 판매자)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을 위한 법적 조치를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대상 및 주요개념인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수수료, 광고비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 법의 적용범위는 플랫폼 사업자 중 매출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수수료 수입이 1백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또는 중개거래 금액(직전 사업연도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통해 판매가 이루어진 상품·용역 판매가액 합계액이 1천억원 이상인 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로 함(안 제3조).

다. 이 법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등에는 적용하지 않음(안 제4조).

라.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거래조건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사전적인 분쟁예방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에게 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를 부여하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명시(필수 기재사항)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해당 약관과 동의사실을 언제든지 열람·저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계약서 서면 제공의무 등을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7조 및 제9조).

마.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는 검색·배열순위를 결정하는 기본원칙을 온라인 플랫폼에 공개하여야 함(안 제8조).

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제한·중지·해지하는 경우 사전통지 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사. 기존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금지 조항을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여 부당한 이용사업자 차별행위, 특정 결제방식 강제행위,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제공 제한·중단·거절행위, 그리고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함(안 제12조).

아. 그 외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행위, 배타적 거래 강요 행위,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행위 등을 별도로 금지행위로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자. 건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및 이를 구

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 간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온라인플랫폼중개거래계약서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안 제18조).

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협약에 대한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9조).

카.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또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주도하여 자율적으로 규약을 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20조).

타.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실효성 있고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함(안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

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의 위반사실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이 법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30조 및 제31조).

하.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안 제32조).

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업자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 등).

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자발적 시정방안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함(안 제36조).

4

정무위원회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398호



박 홍 배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3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19 등에 따른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비대면거래 증가, 중복점포 정리 확대 등에 따라 은행 점포(지점, 출장소 등) 감소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오프라인 영업망 감소는 온라인 기반으로 금융거래 환경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추세적으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점포 감소에 따라 금융소비자, 특히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심화될 우려가 있고, 전반적인 금융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非)대도시권의 경우 점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은행 영업점 폐쇄 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서비스 접근성 저하 문제를 예방하고, 국민의 금융권 이용 편의성을 보장하기 위해 은행권과 감독당국으로 하여금 영업점 폐쇄에 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여 점포 효율화 추진 과정에서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에 은행이 영업점을 폐쇄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사전 신고 및 보고를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접근성을 고려하여 신고 수리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폐쇄가 결정된 경우 해당 영업점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5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56호



윤 한 홍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5. 제안

제안이유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추후 매수하여 상환하는 신용매도로, 모든 선진 증시에서 널리 허용되는 거래기법임.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결제 불이행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투기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불법으로 엄격히 금지됨. 우리나라는 해외 증시와 달리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공매도의 부작용이 더욱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며, 최근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2025년 3월 30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음. 이에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제재 강화 등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의 불법·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차입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제한(안 제180조의4)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마지막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공시 전까지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여 공매도를 통해 전환가액 또는 신주인수권행사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차익을 얻는 행위를 제한함.
- 나. 공매도 목적 대차계약의 상환기간 제한(안 제180조의5)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상환기간 제한을 적용받도록 하고, 대차 중개기관이 대차계약의 목적에 따라 상환기간을 구분 관리하도록 함.
- 다.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및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안 제180조의6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에 대하여 차입공매도를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투자중개업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투자자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한 이후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도록 함.
- 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확대(안 제407조)
 금융투자상품 거래제한대상자가 제한명령에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고, 이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리는 금융투자상품의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 마. 지급정지 요구 신설(안 제426조의2 신설)

불법적 이익의 은닉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벌금 및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하였거나 무차입 공매도를 하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금융거래를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계좌 자산의 처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바.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 신설(안 제426조의3 신설)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채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 적용(안 제427조 및 제437조)

공매도 내부통제기준, 전산시스템 구축 등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무차입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과 동일한 조사 및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규정을 적용함.

아. 무차입 공매도 등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안 제443조)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불공정거래와 동일하게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함.

자. 지급정지 조치 누설시 형사처벌 신설(안 제446조)

지급정지 조치가 완료되기 전에 명의인 등 제3자에게 누설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차. 대차 상환기간 위반,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지급정지 조치 및 제한명령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안 제449조)

안 제180조의5에 따른 차입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위반 및 대차 중개기관의 구분 관리 위반, 안 제180조의6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위반,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요구 위반, 안 제426조의3에 따른 제한명령 등 위반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안 제426조의2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 통지 위반 및 안 제426조의3에 따른 거래제한대상자의 요청 관련 처리결과 통보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6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20호



송 언 석

선 거 구 경북 김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7.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발생한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통신판매중개자의 자의적인 대금 정산 주기와 부적절한 판매 대금 관리가 지목되고 있음.

현행법상 대규모유통업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지만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판매 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도 미비함.

이에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를 확정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하고, 정산이 지연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이율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함(안 제20조의 4 신설). 또한 판매 대금을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를 통하여 별도 관리하도록 하여 통신판매중개자가 판매 대금을 임의대로 유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5 신설 등).

7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31호



김 상 훈

선 거 구 대구 서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계약에서의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문제되는 특약을 설정할 유인을 제거하여 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3항 신설).

8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71호



김 태 년

선 거 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5선(제17대, 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1.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 같은 현행법상의 허점을 악용하여 연초에서 유래하지 않은 합성 니코틴을 주된 원료로 제조되고 있음. 이들 제품은 사실상 담배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각종 담배 규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임.

담배에는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개별소비세 등 각종 제세부담금이 부과되는 반면 합성 니코틴은 과세 근거가 없어 2023년 기준 총 11.7조 원에 달하는 담배 관련 제세부담금의 세원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는 제조, 수입, 판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무분별한 광고행위, 전자상거래가 가능하여 청소년 흡연 접근성을 높이고 담배 시장의 혼란을 조장하고 있음. 일반 담배 제품들과 달리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독성과 안정성에 대한 검증 또한 불가능한 실정임.

미국, 캐나다 등과 스웨덴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합성 니코틴 담배에 일반 궤련 담배와 유사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합성 니코틴의 규제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줄기나 뿌리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뿐만 아니라,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까지 확대하고, 최근 판매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무(無)니코틴 담배 등 추후 새롭게 등장할 다양한 신종담배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담배의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고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과 안전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개정).

9

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39호



김 미 애

선 거 구 부산 해운대구을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원 초과 구간에 대하여 24%의 최고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인 21.5%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1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63호



정 성 호

선 거 구 경기 동두천시양주시
연천군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5선(제17대, 제19대, 제
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2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2024년 방위사업청 주요정책 추진계획에서 K-방산을 안보기반과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글로벌 방산 선진국이 이미 시행 중인 금융지원 제도, 기술이전, 기술료 면제 등 자국 방위산업 육성 정책에 비해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이 미흡한 상황임.

방위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이자 첨단산업을 견인하는 선도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기술 보유국의 수출통제제도 회피를 위한 핵심 소재·기술 내재화 및 경제 안보 강화, 선진국과의 기술격차 해소, 첨단기술 확보를 통한 자주국방력 강화, 지속적인 방위산업 수출 확대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정책 수립이 필요함.

한편,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폭발적 고도화 등 관련 기술이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산업, 사회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가 예상되고,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국민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어, 인공지능 원천기술 경쟁력 및 서비스 접목을 통한 상용화 등 인공지능 분야 경쟁력이 국력으로 직결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방위산업 및 인공지능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한편,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우원회특집
산업특정사업자원중소벤처기업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의폐회의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79호



김 장 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6.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사업금액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제도는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성장과 주사업자 다변화 등 국내 소프트웨어산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기업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고 공공소프트웨어 시장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설계·기획 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내용·구조 등이 명확히 도출되도록 하고 클라우드 전환 촉진, 인공지능 등 민간의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설계·기획 단계 사업을 전면 개방하여 역량있는 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오류 발생 시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심각한 국민 불편·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하는 한편, 대형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 대해서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체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프트웨어 개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함(안 제48조제3항제6호 신설).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참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범위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8조제4항 삭제).

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77호



양 문 석

선 거 구 경기 안산시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6.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사업자)는 언론이 생산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할 수 있으며, 2023년 기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뉴스 이용률은 약 70%에 이르고 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네이버와 다음과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경우 각 회사 고유의 알고리즘에 의해 개인에게 추천하는 방식으로 기사 배열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 특정 성향의 언론 기사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등 기사 노출 방식의 편향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기사를 배열하는 구체적인 기준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0조).

1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63호



이 해 민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조국혁신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김 우 영

선 거 구 서울 은평구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8.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터넷서비스가 동영상(OTT 등)을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수의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트래픽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망 이용대가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디지털콘텐츠 제공 시 정보통신망 이용·제공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제재해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CP)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해 망 사용 추이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망 이용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4조의3 신설 등).

1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43호



이정헌

선 거 구 서울 광진구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모바일콘텐츠 서비스는 국민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이는 앱마켓시장에서 다수의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이 기여해 온 상호작용의 결과임.

그러나, 스마트폰에 필수적인 모바일 OS를 통해 앱마켓 시장을 선점한 사업자들이 앱결제방식 제한, 자기 앱마켓 이용 등을 강제하면서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들의 선택권은 상당히 제한되고, 대형 앱마켓 사업자의 독점은 더욱 고착화되고 있음.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앱마켓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을 제정한 바 있으나, 일부 앱마켓사업자들은 자기 앱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를 여전히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모바일콘텐츠 사업자가 제3자 결제를 이용할 경우 해당 앱마켓 이용 대비 실질적으로 같거나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 조항을 우회하거나 회피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우리나라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를 금지하는 법 제정에 주목한 EU, 영국 및 일본 등에서는 대형 앱마켓사업자에게 자기 앱마켓 외부에서의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EU에서는 DMA(Digital Market Act)에 따라 애플이 자기 앱마켓에서만 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제재를 진행 중인 상황임.

이에 앱마켓사업자가 자기 앱마켓 외부에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다른 결제방식을 허용하도록 하여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결제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이에 따른 경쟁활성화를 통해 이용자와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9호 개정 및 제5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유원회 특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거의 폐회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56호



유용원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방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4.	제안
----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자원안보 추진체계,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 관리, 위기대응체계 등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5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동 법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실정에서 주요국의 자원 무기화 추세가 심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지정학적 위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에너지·자원 분야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을 인식하여 마련된 것임.

그런데, 최근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면서 방위협정을 체결하였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공급에 대한 국제적인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우리나라 농축시설의 40%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은 핵심자원의 특정 국가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국가 안전보장은 물론 국민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있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자원인 우리나라 등에 대한 공급원 다변화 및 공급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위해 필요시 수의계약을 허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 구매 및 조달에 안전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4조).

1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402호



최형두

선 거 구 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30.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 중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며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특히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의 핵심원자재법(CRMA), 중국의 핵심광물 및 기술 수출금지 확대 등 주요국의 보호정책은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대되어 수출 중심인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한편, 현행법상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한 투자 활성화 지원의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아무런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 촉진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국가재정법상 설치된 기금 등을 통해 첨단산업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을 활용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1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648호



이 언 주

선 거 구 경기 용인시정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3선(제19대, 제20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8. 제안

제안이유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이차전지 등 4개 분야에서 국가 경제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첨단전략기술 및 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의 수립, 기술 보호조치, 특화 단지 지정 및 운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중국 등이 자국 반도체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촉진하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만으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아울러, 현행법상 반도체 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는 규제적 성격이 강해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대통령 소속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및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반도체산업특별회계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 및 지원함으로써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이 국가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여 반도체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년도의 실행계획 이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6조).
- 마.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과 관련된 정부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반도체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7조).

- 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반도체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인프라 조성 등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함(안 제9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클러스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력 및 용수 공급 산업기반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안 제12조).
-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이 반도체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금의 일부를 용자할 수 있음(안 제13조 및 제14조).
- 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망안정품목을 선정하고, 반도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반도체산업 공급망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1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23호



권향엽

선 거 구 전남 순천시광양시
곡성군구례군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횡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2	제안

제안이유

최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기술유출이 심각해지고 온라인을 통한 해외로의 기술탈취가 증가하고 있음.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19년 14건, 2020년 17건,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으로 집계됨.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유출·침해행위 금지와 관련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으나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2017~2021년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으로 처리된 제1심 유죄 판결 중 유기징역(실행)을 선고받은 사건은 6.2%에 불과한 반면, 무죄와 집행유예는 74.1%로 대부분 낮은 형량이 선고되고 있어 처벌수위를 높여 산업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산업기술유출범죄에 있어 의회에 대한 보고의무, 목적범이 아닌 고의범 처벌규정 마련, 민사적 구제 강화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처벌의 법적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원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가 제기된 경우 원고의 신청에 따라 임시로 산업기술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의 유출 현황 및 시정 방안 등의 보고서를 매년 2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다.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65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라.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해당 행위를 한 자는 3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안 제36조제2항).

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546호



송재봉

선 거 구 충북 청주시청원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05.	제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해 공휴일 중에서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지정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한 것은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평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중소기업과의 갈등이 야기되고 공휴일에 근무해야 하는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평일이 아닌 공휴일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무휴업 제도의 입법 취지를 살리고 대형마트 등의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제3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24호



송 언 석

선 거 구 경북 김천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3선(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19.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최저임금제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첫해를 제외하고 36년째 전 산업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왔음.

그러나 2018년부터 올해까지 7년간 최저임금이 52%나 상승하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과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들의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현행법에 따라 사업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적용해달라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의 요구도 계속되고 있음.

특히, OECD 41개국 중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캐나다 등 19개국은 이미 업종별·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하여 적용하며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연령별로 구분하여 정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격차가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

21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36호



권 영 세

선 거 구 서울 용산구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5선(제16대, 제17대,
제18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2.	제안

제안이유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는 건축물 구조설계 오류, 시공불량, 부실자재 사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에 도입되었음.

그런데 현행법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모니터링업무의 위탁 근거,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이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와 내용, 자료제출·점검 등 근거,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재설계·보강·공사 중단 등의 조치, 모니터링업무의 위탁근거, 결과조치 위반에 따른 벌칙규정 등을 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설계·시공 단계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안전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건축공사장 등 점검,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68조의3제1항 및 제3항 신설).
-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도록 함(안 제68조의3제2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과 관련된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축안전모니터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68조의3제4항 신설).
- 라. 건축안전모니터링 위탁기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허가권자는 보고를 받은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를 건축관계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 마. 건축안전모니터링의 결과 설계·시공이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설계, 보강,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허가권자는 제출받은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68조의4제3항 신설).
-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제5항 신설).

사. 건축안전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
(안 제105조제4호의2 신설).

아. 건축안전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안
제110조제13호 및 제111조제9호 신설).

자. 건축안전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을 거부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113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2항제6호의2 신설).

22

국토교통위원회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850호



박 해 철

선 거 구 경기 안산시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4.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기계설비법은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로 하여금 열원설비, 냉난방설비, 공기조화 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건축법상 창고시설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내부에서 노동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공간임에도 건축법상 창고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분진과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물류센터를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별도의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물류센터 내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환기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분진과 폭염 등으로부터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안 제2조).

23

국토교통위원회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056호



김 원 이

선 거 구 전남 목포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2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에 대해 도서(섬)지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규정이 없음.

그런데 일부 택배사에서는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연결되어 사실상 육지와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차이가 없음에도 도서(섬)지역으로 분류하여 물류비를 할증하여 부과하고 있어, 해당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이들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어 왔음.

이에 택배서비스사업자에게 실제로 육지와 다름없는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의 운임을 육지와 육지 사이의 화물 운임이나 요금보다 더 많이 받지 못하게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12호의2 신설).

24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740호



한정애

선 거 구 서울강서구병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8.12.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현재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신차를 출시할 때 차량의 크기와 무게, 최대출력, 전비, 배터리 용량 등은 안내하지만 배터리 제조사 또는 제품명 등 상세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140대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고, 주차장 내부 온도가 1,000도 이상 넘게 치솟으며 지하 설비와 배관 등이 녹아 480여 세대의 전기와 물 공급이 끊기는 상황이 발생했음.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벤츠 전기차의 배터리가 당초 중국 배터리 1위 업체인 CATL 제품이 탑재된 것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국토부 조사를 통해 10위권 업체인 중국 파라시스 제품이 탑재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전기차 제조사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기밀 등을 이유로 배터리의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이에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전기차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함(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Policy & Business
Report**



III.

소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간호법안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5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6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1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57호



이 연 희

선 거 구 충북 청주시흥덕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7.03.	제안
상임위원회	2024.07.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24.08.01.	상정
		축조심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임. 안전운임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줄임운전, 과속과 과적의 비율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제도 도입의 효과가 유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임의 품목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안전운임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 적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된다는 일몰조항으로 제도가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며 유효기간 없이 지속운영되도록 함으로써 안전운임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까지 신설 등).

참고자료

[안전운임 및 안전운송원가 비교]

	① 안전운임	② 안전운송원가
도입대상	컨테이너·시멘트(전용 트레일러)  	철강재(전용 트레일러), 일반형 화물차  
공표내용	①안전운송운임 : 화주→운송사 ②안전위탁운임 : 운송사→차주	차주 원가
공표형태	운송 1회당 운임 (거리별) * (예시) 400km 80만원/회, 1~550km공표	①단위 원가 (1km 운송 시 원가) ②1개월 운행 시 발생하는 총 원가 * (예시) 750원/km, 650만원/1개월
시행기간	3년('20.1.1~'22.12.31)	지속 시행(일몰제 해당없음)
강제성	있음(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없음(시장에서 운임 결정 시 참고)

자료: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차량 현황(2022년 기준)]

구분	시장전체	안전운임제 대상		
		소계	컨테이너	시멘트
물동량	-	2.77만대(6.1%)	2.54만대(5.5%)	0.23만대(0.5%)
-	운전자 보조	2.57억톤	2.36억톤	0.21억톤

자료: 국토교통부

[기존 안전운임제도 관련 규정]			
조문	내용	벌칙	과태료
§5의2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의 설치 등	-	-
§5의3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심의기준	-	-
§5의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및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공표	-	-
§5의5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효력	有	有
§5의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	-
§5의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	-
§5의8	운송비용 등 조사	-	-
§67	1의2. 제5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서로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70①	1. 제5조의5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자	-	500만원

[안전운임제가 교통안전에 미치는 효과]

(괄호: 전년 대비 증감률)

구분	차종	시행 이전	시행 이후				'19년 대비 증감률 (3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수 (명)	전체 자동차	3,349	3,081 (8.0%↓)	2,916 (5.4%↓)	2,735 (6.2%↓)	13.1%↓	
	견인형 화물차	21	25 (19.0%↑)	30 (20.0%↑)	26 (13.3%↓)	28.6%↑	
사고 건수 (건)	전체 자동차	229,600	209,654 (8.7%↓)	203,130 (3.1%↓)	196,836 (3.1%↓)	11.5%↓	
	견인형 화물차	690	674 (2.3%↓)	745 (10.5%↑)	679 (8.9%↓)	1.4%↑	

* '견인형 화물차'는 전체 사업용 견인형 화물차 3.55만대를 기준으로 한 통계수치이며, 안전 운임제 대상 차량(컨테이너·시멘트)은 견인형 화물차의 78%(2.77만대)로 추정.(22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안전운임제 시행 전후 차주 근로조건 변화]

구분	연도	시행 이전	시행 이후				'19년 대비 증감률 (3년 평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월평균 근로시간	컨테이너	292.1	289.5 (0.9%↓)	276.5 (4.5%↓)	264.3 (4.4%↓)	5.2%↓	
	시멘트	375.8	354.3 (5.7%↓)	333.2 (6.0%↓)	375.2 (12.6%↑)	5.7%↓	
월평균 운행일	컨테이너	22.3	22.1 (0.9%↓)	22.3 (0.9%↑)	22.4 (0.4%↑)	-	
	시멘트	24.4	24.1 (1.2%↓)	23.8 (1.2%↓)	679 (8.9%↓)	1.9%↓	

* 화물운송시장 동향보고서(교통연구원)

주요발언

<제416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 국토교통부제2차관 백원국

일단 큰 틀에서, 지금 안전운임제를 영구적으로 제도입하자 그리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자는 이연희 의원안과 홍기원 의원안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짚어 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인 화주의 운임을 이렇게 강제하는 것이 맞냐 또 운수기업의 이윤을 법으로 정부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맞냐, 이것은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할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률적 산정이 어렵고 시장 수용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차주의 최소운임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 도입과 함께 지입제 개선 등의 차주 보호 대책 또 과적 방지 등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포괄하고 있는 김정재 의원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 엄태영 위원



안전운임제가 당초에 여야 합의로 취지는 참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험 운행해 보고 다시 정하자는 그것도 상당히 탄력적이고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3년 운영해 보니까 화물차 기사의 운임의 일정 정도를 보장해 주고 근로 여건을 개선해 주는 여러 가지 좋은 결과가 있는데 또 안전도 보장되는데 3년 지내보니까 사고율도 더 낮아지고 더 높아졌고 또 시행을 해보니까 일단 당초 취지대로 화물차 차주, 기사들의—직접 다 운전하니깐요—운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참 좋는데 중간에 운수사, 운송사들이 대형이 많습니까, 물론 천차만별이지만. 예를 들자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는 그냥 앉아서 받으니까 이게 개선도 안 하고 혁신도

안 하고 대형 운수사의 배만 불러 주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다 보니까 이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화주와 운수사는 자율적으로 하게 하고 거기서 차주의 운임은 보장해 주는 이런 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면 정부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윤종오 위원



이 법의 허점을 노려서, 컨테이너에 이미 실려 있던 것을 그냥 싣고 오면 되는데 사실은 운임 아끼려고 옮겨 실어서 실제로 화물노동자들에게 수익이 적게 돌아가게 하는 그런 구조로 운영됐던 적도 많고요. 시멘트 같은 경우도 사실 원료가 지금, 완제품도 중요하지만 시멘트 원료도 중요한데 원료는 사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시멘트 완제품만 적용했던 부분도 있고. 지금 계속 안전운임제가, 마치 이것을 운영하고 나서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거의 없다, 오히려 더 많이 발생했다,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처음에 취지 자체가 운전하시는 분들이 너무 과로 또 과적, 과속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어쨌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출발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한 것 중에서 오히려 늘어났다, 이것은 실제로 전체 사업용 견인 화물차 3만 5000대를 기준으로 한 수치가 아니고 그중에서 일부를 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통계를 다시 다 내면, 적게 싣고 과속 적게 하고 하면 당연히 사고가 적게 날 확률이 높은 것이지 이것을 실시했기 때문에 더 높다, 이

주장은 진짜로 안 하시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실시하고 난 이후 또 실시를 중단한 이후에 노 동자들한테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저음운전이 70% 이상 증가했다 또 과속운전도 약 66% 이상 증가했다 또 과적도 한 58% 이상 증가했다, 이런 면접조사 결과도 제가 받아 봤고요. 하여튼 지금 현재 안전운임제 제도가 보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데 철강 부분도 사실 빠져 있어요. 이것을 꼭 품목으로 할 것인지, 차종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논의와 실태조사 이런 것들 바탕으로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 제안된 법안보다 조금 더 보완하는 법안이 만들어져서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IV.

상임위원회

1. 상정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상정 법률안 목록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회운영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법제사법위원회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6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기획재정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교육위원회		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3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국립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
		8	국립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
		9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1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
		16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18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1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정 법률안 : 의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일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하여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대상 안건 법률안
 ○ : 주요 법률안 소개에 해당하는 법률안 ● : 법률안 비교·분석에 해당하는 법률안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6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7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8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	10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	11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1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14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교통일위원회		1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행정안전위원회		1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3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1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농어업회의소법안
		4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보건복지위원회		1	간호법안
		2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3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9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16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회	○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위원회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주요 법률안	번호	법률안명
국토교통위원회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6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여성가족위원회			상정 법률안 없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03호



박 충 권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21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5.30.	제안
상임위원회	2024.0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안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연구인력지원·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국가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정의, 관리·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연구자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 법률로서 제정하여 민간 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기관·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함(안 제2조).

다. 국가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통계를 작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및 제5조).

라. 기업의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받아서는 아니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28조).

바.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소속된 기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업의 기술혁신에 기여한 연구자의 공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24일을 기업 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함(안 제19조).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053호



안 철 수

선 거 구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4선(제19대, 제20대, 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4.05.31.	제안
상 임 위 원 회		상정
		제안설명
	2024.07.16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이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은 물론 산업적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음.

이처럼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이 거의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인공지능기술은 대량의 데이터를 학습하여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계학습에 기반하고 있어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이즈 데이터로 인한 오류생성 가능성도 큼.

따라서 인공지능기술이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통제수준을 넘어서서 고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의 필요성이 있음. ChatGPT 4.0 출시 이후 법률을 통해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지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이 더욱 시급해졌고 유럽 의회가 「인공지능법」을 제정하여 구체적인 규제에 나서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의 부작용과 위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공지능 산업진흥 및 규제 정책을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임. 단순한 신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규제를 넘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제한을 지양하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인공지능 관련 산업진흥과 규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임.

이에 향후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 인공지능사업자의 책무 및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고, 고위험 인공지능·저위험 인공지능으로 인공지능의 유형을 구분하여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공지능과 관련한 시책을 구분하여 마련하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기술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동시에 인공지능 관련 신뢰기반 조성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개발 및 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 고위험영역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사업자 등에 대하여 정의 함(안 제2조).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3년마다 인공지능의 안전하고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는 인공지능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전략,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5조).

위 원 회 특 진 안
 산 업 진 흥 상 자 원 중 소 벤 처 기 업
 발 의
 소 위 원 회
 상 임 위 원 회
 구 회 피 회 의

- 라. 인공지능사회의 구현, 인공지능산업의 신뢰 확보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기본 계획의 수립 및 그 추진상황 점검·분석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고 인공지능사회의 신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운영할 수 있음(안 제11조).
- 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 및 알고리즘의 개발 활성화와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국내·외 동향 및 관련 제도의 조사, 기술의 실용화, 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인공지능기술의 발전과 관련된 표준화를 위하여 표준 제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및 제13조).
- 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생산·수집·유통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다양한 학습용데이터를 제작·생산하여 제공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 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9조).
- 자. 인공지능등과 관련한 연구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22조).
- 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등이 국민의 생활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이용을 위한 신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24조).
- 카. 고위험영역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제도를 마련하고, 고위험영역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 타.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가 생성형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에 의한 생성 사실을 결과물에 표시하여야 함(안 제29조).

 **참고자료**

[EU 인공지능법의 인공지능 단계별 규제]

구분	유형	규제
수용 불가능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의 잠재의식 또는 취약점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 - 개인의 “사회적 점수(social score)”를 도출하는 시스템 - 자연인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평가하는 시스템 - 직장 및 교육 기관에서 자연인의 감정 추론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 - 공공장소에서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시스템 (일부 예외 허용: 납치, 인신매매, 성적 착취 피해자 및 실종자 수색/테러 위협 방지범죄자와 범죄 혐의자 신원 및 위치 파악) 등 	○ 사용 금지
고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인의 생체 인식·분류 - 도로, 수도, 가스 등 중요 인프라의 관리·운영 - 교육 및 직업훈련 - 고용, 근로자 관리 및 자영업 - 필수 민간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혜택 향유 - 법 집행 - 이민, 망명 및 국경 통제 관리 - 사법행정 및 민주적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배포자 의무 - 기본권 평가 - 적합성 평가 - 품질 관리 시스템 보유 - AI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생성된 로그 보관 -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 - 시장출시후모니터링 의무 등
제한된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결정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비정형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로 변환하는 AI 시스템 - 수신 문서를 분류하는 AI 시스템 - 애플리케이션 간 중복 탐지에 사용되는 AI 시스템 등 	○ 투명성 의무
저위험	- 그 밖의 AI 시스템	○ 별도의 규제 없음

[미국 행정명령 정책영역별 주요 의무요건 지침]

정책영역	의무요건	책임기관
안전 및 보안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안전 및 보안을 개발 및 배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과 모범관행 및 테스트 환경 개발	국립표준기술연구소 (에너지부,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립과학재단)
혁신 및 경쟁	AI 교육 또는 일자리를 위해 미국에 오고자 하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 절차를 간소화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근로자 지원	AI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대통령에게 보고서 제출	경제자문위원회
인공지능 편향 및 시민권에 대한 고려사항	기관 및 규제기관을 소집하여 알고리즘 및 인공지능 관련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어떻게 각자의 권한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의	법무부
소비자 보호	보건복지부 AI 전담반 설립	보건복지부 (국방부, 보건부)
개인정보보호	기관에서 조달한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 파악	관리에산국
연방기관의 AI 사용	연방기관의 AI 사용에 관한 부처 간 협의회를 소집하고 의장 역할 수행	관리에산국
국제관계 리더십	AI 기준 수립의 추진 및 개발을 위한 글로벌 추진 계획 수립	상무부

출처: 오유빈, '미국의 인공지능 입법 현황과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 국회도서관, 2024.1.4.

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206호



박 상 혁

선 거 구 경기 김포시을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재선(제21대, 제22대)
소속위원회 정무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6.07.	제안
상임위원회	2024.07.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하여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 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62조의2 신설).

참고자료

[데이터센터 규모 기준]

상면 면적기준	전력 수전용량기준
중소형(2,000㎡ 이하)	10,000kW 미만
대형(2,001 ~ 7,500㎡)	10,000 ~ 19,999kW
거대(7,501 ~ 22,500㎡)	20,000 ~ 39,999kW
메가(22,501㎡ ~)	40,000kW

주: 위 기준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것이 아니고, 같은 공간이어도 얼마나 기기를 넣는지 및 어떤 기기를 넣는지 여부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달라지게 되므로 두 가지 기준을 동시에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함.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3.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현황]

	운영사	센터명	시도: 소재지
1	부산은행	BNK금융그룹 IT센터	부산광역시
2	CJ올리브네트웍스	CJ올리브네트웍스 송도 IDC	인천광역시
3	DB Inc	DB죽전데이터센터	경기도
4	대구은행	DGB혁신센터	대구광역시
5	Digital Realty	ICN10	서울특별시
6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서울특별시
7	IBK 기업은행	기업은행 IT센터	경기도
8	JB금융	광주은행본점센터	광주광역시

	운영사	센터명	시도: 소재지
9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영창센터	서울특별시
10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통합 IT센터	경기도
11	KB금융그룹	KB국민은행 여의도센터	서울특별시
12	하나금융티아이	통합데이터센터	인천광역시
13	KINX	케이아이엔엑스 도곡센터	서울특별시
14	KT Cloud	KT부산IDC	부산광역시
15	KT Cloud	KT대구IDC	대구광역시
16	KT	KT청주IDC	충청북도
17	KT	KT광주IDC	광주광역시
18	KT	KT대전광역시IDC	대전광역시
19	KT Cloud	KT목동1IDC	서울특별시
20	KT Cloud	KT강남IDC	서울특별시
21	KT Cloud	KT여의도IDC	서울 영등포구
22	KT Cloud	KT천안CDC	충남 천안시
23	KT Cloud	KT분당IDC	경기 성남시
24	KT Cloud	KT목동2IDC	서울 양천구
25	KT Cloud	KT용산IDC	서울 용산구
26	KT GDH	KT GDH	경남 김해시
27	LG CNS	상암T센터	서울 마포구
28	LG CNS	부산 글로벌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부산 강서구
29	LG CNS	LG CNS 인천센터	인천 계양구
30	LG CNS	LG CNS 가산센터	서울 금천구
31	LG유플러스	LG U+ 서초1 IDC	서울 서초구
32	LG유플러스	LG U+ 서초2 IDC	서울 서초구
33	LG유플러스	LG U+ 대구IDC센터	대구 중구
34	LG유플러스	LG U+ 가산IDC	서울 금천구
35	LG유플러스	LG U+ 상암IDC	서울 마포구
36	LG유플러스	LG U+ 논현IDC	서울 강남구
37	LG유플러스	LG U+ 평촌메가센터	경기 안양시
38	Microsoft	MS KOREA	부산 강서구
39	NH 금융그룹	NH통합IT센터	경기 의왕시
40	NH 금융그룹	농협정보기술연구원	경기 안성시
41	NHN 클라우드	NHNC	경기 성남시
42	나이스홀딩스	나이스데이터센터	서울 강동구
43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서초센터	서울 서초구
44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일산센터	경기 고양시
45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IDC분당센터	경기 성남시
46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가산IDC	서울 금천구
47	SK브로드밴드	SK브로드밴드 일산2IDC	경기 고양시
48	SK(주) C&C	SK C&C 대덕데이터센터	대전 유성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발의

소위원회

상임위원회

국회법회의

	운영사	센터명	시도: 소재지
49	SK(주) C&C	SK C&C 판교캠퍼스A	경기 성남시
50	SK텔레콤	성수국사	서울 성동구
51	SK텔레콤	대덕국사	대전 서구
52	교보정보통신	교보데이터센터	인천 연수구
53	네이버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각 춘천	강원 춘천시
54	농협정보시스템	농협정보시스템 여의도 IDC센터	서울 영등포구
55	다우기술	다우IDC마포센터	서울 마포구
56	대상정보기술	대상그룹 전산센터	서울 중랑구
57	더존비즈온	더존비즈온 D-클라우드센터	강원 춘천시
58	동국시스템즈	동국제강 전산실	서울 중구
59	드림마크원(드림라인)	드림마크원 구로IDC	서울 구로구
60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UBIT센터	서울 금천구
61	롯데정보통신	롯데정보통신 용인 정보기술연구소	경기 용인시
62	삼성SDS	삼성SDS 수원데이터센터	경기 수원시
63	삼성SDS	삼성SDS 구미데이터센터	경북 구미시
64	삼성SDS	삼성SDS 상암데이터센터	서울 마포구
65	삼성SDS	삼성SDS 춘천데이터센터	강원 춘천시
66	삼성SDS	삼성SDS 동탄데이터센터	경기 화성시
67	세종텔레콤	세종텔레콤 IDC 분당센터	경기 용인시
68	수협중앙회	데이터센터	서울 송파구
69	신세계아이앤씨	신세계아이앤씨 데이터센터	경기 김포시
70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71	신한은행데이터센터	신한은행데이터센터센터	경기 고양시
72	싸이버원	싸이버원 IDC	서울 동작구
73	아시아나IDT	금호아시아나데이터센터	서울 강서구
74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FIS 상암센터	서울 마포구
75	케이엘넷	IDC센터	서울 강남구
76	코스콤	코스콤 여의도 DC	서울 영등포구
77	코스콤	코스콤 안양센터	경기 안양시
78	포스코DX	포스코 포항데이터센터	경북 포항시
79	포스코DX	포스코 충주데이터센터	충북 충주시
80	포스코DX	포스코 광양데이터센터	전남 광양시
81	한화시스템	한화그룹통합데이터센터	경기 용인시
82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파주데이터센터	경기 파주시
83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 광주데이터센터	광주 광산구
84	현대자동차그룹(현대오토에버)	의왕 데이터센터	경기 의왕시
85	호스트웨이아이디씨	호스트웨이IDC	경기 성남시

주: 2023년도 기준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4.7.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장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352호



김 장 겸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국민의힘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 수	2024.06.12	제안
		상정
상 임 위 원 회	2024.07.16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거짓 또는 왜곡 등의 방식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조작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 허위조작정보는 기존의 정보와 허위의 사실을 교묘하게 혼합하는 형태로 생산되는 경우가 많아 이를 판별하는 것이 쉽지 않고, 한번 생산되면 인터넷 상에서 급속도로 확대·재생산된다는 특징을 가짐.

허위조작정보는 미디어 환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으며, 허위조작정보의 대상이 된 개인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유통방지 대책 마련 및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EU는 ‘디지털 중개서비스 제공자는 불법정보 삭제 및 차단을 위한 특별한 의무를 부담하고,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의 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DSA)을 지난해부터 시행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공적 책임을 강화한 바 있고, 독일은 지난 2018년 네트워크집행법(NetzDG)을 시행해 사업자는 이용자에게서 신고된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일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차단하고 재심사·중재 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규정했으며, 반기별로 불법 콘텐츠 처리 결과를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콘텐츠 책임을 강화하고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음.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여야 할 의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 지정의무 등을 부과하고,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포함시키며, 허위조작정보로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해당 침해 사실을 인식한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정보의 삭제·반박내용의 게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허위조작정보를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또한,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책임자 지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여 의무의 이행을 유도함으로써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44조의7 및 제44조의11 신설 등).

5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신장식·윤종오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562호



이 용 우
선 거 구 인천 서구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 속 위 원 회 환경노동위원회



신 장 식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조국혁신당
당 선 횟 수 초선(22대)
소 속 위 원 회 국회운영위원회,
정무위원회



윤 종 오
선 거 구 울산 북구
정 당 진보당
당 선 횟 수 재선(20대, 22대)
소 속 위 원 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하여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결국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지 오래임.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여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꾀하고자 함.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6.17.	제안 상정
상임위원회	2024.06.20.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2024.06.28.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
소위원회	2024.07.09.	상정
	2024.07.16.	상정 의결 (대안반영폐기)
안건조정위원회	2024.07.18.	상정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폐기)
상임위원회	2024.07.22.	상정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주요내용

- 가.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는 근로자로 추정하여 실제 근로자임에도 장기간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의 불합리를 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 나.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 등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정의를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 다.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할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 라.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경영상 해고 포함) 기타 대우 등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사업재편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노동조건과 근로자의 지위 포함),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 마.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 바.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사.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아.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자.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차.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6항 신설).
- 카.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7항 신설).
- 타.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파.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하.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참고자료**

[제21대 국회 본회의 의결안 주요내용]

구분	개정내용	개정취지
사용자 개념 확대 (제2조제2호)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봄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지배력 범위에 따라 원청 사용자까지 사용자로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2조제5호)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부당노동행위 철회, 단체협약 이행 등과 같은 법률분쟁(권리분쟁)에까지 정당한 쟁의행위 범위 확장
배상의무자별 손해액 산정 (제3조제2항)	법원은 쟁의행위 손해를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책임 산정 의무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공동불법행위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완화하여 개별 불법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배상책임 부과 방지
신원보증인 면책 (제3조제3항)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면제	배상책임이 친인척 등 신원보증인에게 확장되는 것 방지

[현행법과 개정안 비교]

구분	현행	이용우·신장식·윤종오의원안
근로자 개념 확대	임금 등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사람	노조를 조직하거나 가입한 자 추가 (노조가입자 제한요건 삭제)
사용자 개념 확대	근로계약의 당사자 및 사업경영담당자, 노무관리자 등	① 노조 상대방 지위에 있는 자 ② 노동조건, 수행업무, 노조활동 등에 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③ 하도급의 원사업주 추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분쟁	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②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 ③ 근로조건 외 근로자의 지위,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에 관한 분쟁 ④ 쟁의행위 최후수단 요건 삭제
손해배상 청구 제한	이 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	① 현행법에 의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청구 제한 ② 사용자 불법행위, 노무제공 거부, 적법한 쟁의행위에 의한 불가피한 손해 청구 제한 ③ 노조활동 위촉, 근로자 괴롭힘 수단으로 손해배상 청구 금지
개인에 대한 배상청구	허용	노조의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우 금지

구분	현행	이용우·신장식·윤종오의원안
손해배상액 제한 및 감면	규정없음	①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함 ② 노조 존립이 불가능한 수준의 손해배상 청구 금지 ③ 배상액 감면청구 허용 ④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음
신원보증인 손해배상 면제	피용자 고의·중과실로 인한 손해 배상할 책임 유	단체교섭, 정의행위 및 노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

주요발언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김형동 위원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치면서 느낀 소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회의원들의 능력이 저를 포함해서 형편이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객관적으로 21대에 상정된 안하고 존경하는 김주영 의원님 안이 지금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이 추가됐지요, 삭제하는 걸로. 그다음에 손해배상과 관련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민법 761 조를 준용했다는, 원용했다는 부분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또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내부적인 의견이지만 수석전문위원들의 검토보고서, 21대 전반기에 강병원 위원을 비롯해서 송옥주 위원까지 많은 분들이 했던 내용에 대해서 환노위 자체 안에서 의견이 바뀌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황당하더라고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조정위원회를 거쳤는데 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의견이 없습니다. 무결점입니까? 그런 법률안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또 하나는 외부적으로 보면 별로 노동계나 이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몇몇 공공기관이나 선생님 노조, 업계

이런 쪽을 물어봤습니다. 관심 있냐고 그러니까 전혀 관심이 없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늘 주장했지만 특정 단체, 조직을 위한 청부입법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률상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부분은 그때 또 확인을 했었지요. 그게 조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그러면 우리 현 제도로서 이 부분을 개선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아마 우리 이용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초기업 단위 노동조합을 구성을 했을 때 하청,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n차 하도급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충분히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원청과 교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정할 수 있지요. 뭐를 먼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선에 대한 그런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아까 10년, 20년 전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상당한, 논의 과정에서 저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10년, 20년 전에 이른바 이중구조가 많이 이렇게 커 가고 있을 때 이런 법이 굉장히 유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장에서 이 법을 먼저 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와 관련해서 n차 하도급을 멈춰 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초기업법 단위 노동조합을 통해서 교섭을 요구해 달라,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

씬 더 유효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몇 가지 이유로 위원장님께 좀 더 건의드리려는거는 내용상도 그렇고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으로 같음 합니다.

■ 정혜경 위원



저도 법안소위도 들어갔었고 안전조정위원회도 들어갔습니다. 그회의들을 들어가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자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핑계를 대고 있다라고 좀 느껴지고 마치 노동자를 위하는 것 같이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사용자를 위한 핑계를 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특정한 단체에 대한 청부입법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저는 얼마 전까지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활동하고 일을 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로 우리 현장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내지는 또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여 있는 노동자들은 이 법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오늘도 한화오션 노동자들이 국회에 와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은 아직도 여전히 저임금의 산재공화국인 그런 회사에서 원청 사용자가 누구인지 안 나와서 지금도 교섭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호소를 여전히 2년 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애타게 이 법을 기다리고 있는 민생법 안이라고 간절히 계속해서 호소드리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은 이 법을 저지시키기 위해서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뭔가 핑계를 더 대는…… 이렇게 지금 현재 논리를 펴고 계신다, 언제까지 노동자들이 피눈물로 이 법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 법이 개정이 되지 않아서 피눈물을 흘려야 되는가, 이제는 통과될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됐고 19대 국회에서부터 이미 많이 논의된거고 그동안에 수차례 논의되었습니다. 이 법은 반드시 지금 빠르게 통과되어야 합니다.

■ 조정위원장 김주영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주영입니다. 지금부터 안건조정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는 7월 18일 정부 측 관계

자들이 출석한 가운데 대체토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내용과 검토보고 등을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 총 4건의 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박해철 의원, 김태선 의원, 이용우·신장식·윤종오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들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의결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근로자가 아닌 자가 노조에 가입한 경우 해당 노조를 노조로 보지 아니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자를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로 보도록 하여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노동쟁의의 대상에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에서 근로

조건에 관한 분쟁으로 확대하여 이익분쟁뿐만 아니라 권리분쟁도 노동쟁의의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는 손해로 현행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등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을 면제하며 사용자로 하여금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로 인하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위축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법원으로 하여금 배상의무자별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을 면제함으로써 배상 책임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0485호



박홍배

선 거 구 비례대표
정 당 더불어민주당
당 선 횟 수 초선(제22대)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심사 진행 경과		
접수	2024.06.14.	제안
	2024.06.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상임위원회	2024.06.28.	대체토론
		상정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2024.07.11.	의결 (수정가결)
소위원회	2024.07.11.	상정 의결 (수정가결)
상임위원회	2024.07.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민들이 생활하는 아파트 및 건물, 빌딩 등은 대부분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이 가득한 각종 폐기물을 투입해 생산된 시멘트로 신축되고 있음. 시멘트 생산업체들은 생산과정에서 위해 성분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방사능과 발암물질, 각종 중금속은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음.

중금속이 함유된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나 주택 건물에 입주해 몇 년씩 생활하는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가려움증, 알레르기, 두통, 신경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음. 그러나 국민들은 폐기물 시멘트로 지어진 공간에 살면서도 시멘트에 어떤 폐기물이 포함됐는지, 중금속 성분은 무엇이고,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모르고 있음.

이에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13조의6, 제66조제1호의4 신설).

참고자료

[국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추이]

(단위 : 만톤, %)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4.3
폐기물 사용량(A) *대체원료+ 보조연료	643	644	692	721	746	814	775	924	856	841	204
시멘트 생산량(B)	4,705	5,204	5,651	5,740	5,209	5,064	4,752	5,045	5,106	5,112	1,049
비율 (A/B)	13.7	12.4	12.2	12.6	14.3	16.1	16.3	18.3	16.8	16.5	19.4

자료 : 환경부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평균 검출 함량(2023. 1. ~ 2023. 12.)]

구분	6가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수은	납
중금속 평균 함량	6.68	10.15	0.01	107.40	0.03	49.99

(단위 : mg/kg)

1) 정량한계 이하의 불검출 값은 0으로 계산
2) 고려시멘트는 2023.8월 이후로 폐업하여 7월까지의 자료만 활용
자료 : 국립환경과학원, 시멘트 제품 중금속 방사능 분석결과, 2023. 1. ~ 2023. 12.

[시멘트 업계 폐기물 사용 현황]

□ 폐기물 사용현황

(단위 : 천톤)

용도	종류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대체 원료	점토질	석탄재	3,094	3,081	2,436	2,706	2,220	2,694
		오니류	2,155	2,612	2,598	2,856	2,567	2,275
		기타 (광미 등)	412	481	542	709	529	257
	규산질	폐주물사	565	602	563	730	722	597
	소 계		6,226	6,776	6,139	7,001	6,038	5,823
보조 연료	폐합성수지		910	1,016	1,347	1,950	2,291	2,340
	페타이어		214	247	171	164	128	136
	폐고무류		63	68	69	111	102	104
	폐목재 등		51	35	20	15	1	3
	소 계		1,238	1,366	1,607	2,240	2,522	2,583
합 계			7,464	8,142	7,746	9,241	8,560	8,406

□ 시멘트생산량 대비 폐기물투입량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4.3
폐기물 사용량(A) *대체원료+ 보조연료	643	644	692	721	746	814	775	924	856	841	204
시멘트 생산량(B)	4,705	5,204	5,651	5,740	5,209	5,064	4,752	5,045	5,106	5,112	1,049
비율 (A/B)	13.7	12.4	12.2	12.6	14.3	16.1	16.3	18.3	16.8	16.5	19.4

(단위 : 만톤, %)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함량 관련 기준]

□ 대체원료 및 보조연료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기준

구분	유해물질 함량기준 (mg/kg)								
	Pb	Cu	Cd	As	Hg	염소(%)	저위발열량 (kcal/kg)		
대체 원료	철 대체원료	1,000	3,000	60	500	2.0	-	-	
	철 외의 대체원료	150	800	50	50	2.0	-	-	
	슬래그	동 제련소	3,200	10,000	100	900	2.0	-	-
		아연 제련소	7,000	14,000	60	500	2.0	-	-
		그 외	1,000	3,000	60	500	2.0	-	-
	제철소 폐기물 중 분진(철 성분함유) 및 오니(철 성분함유)		4,000	3,000	100	500	2.0	-	-
보조 연료	건조상태 기준	200	800	9	13	1.2	2	4,500	
	폐목재	30	800	2.0	2.0	1.0	2	3,500	

출처: 환경부

[국내외 시멘트 제품 관리 기준 비교]

(단위 : mg/kg)

항목	EU	한국	일본	스위스
Cr(total)	-	-	-	250
Cr(VI)	2 mg/L	20	20	-
As	-	-	-	15
Cd	-	-	-	5
Co	-	-	-	125
Cu	-	-	-	250
Ni	-	-	-	250
Pb	-	-	-	250
Sb	-	-	-	15
Sn	-	-	-	50
Tl	-	-	-	50
Zn	-	-	-	750
구분	법적기준	자율협약	자율협약	법적기준

1. 한국, 일본은 포틀랜드 시멘트 중 수용성 6가 크롬의 자율협약 기준임
2. 유럽은 모르타르(시멘트(450g)+모래(1,350g)+물(225g)) 중 수용성 6가 크롬 기준이며, 스위스는 클링커(시멘트 반제품) 중 중금속 기준임
3. EU 기준(2 mg/L)과 국내기준(20 mg/kg)은 분석방법의 차이로 직접비교는 어려움

[시멘트 제품 중금속·방사능 분석결과(2024.4월)]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단위 : mg/kg, Bq/kg]

업체	항목									비고
	Cr(VI)	As	Cd	Cu	Hg	Pb	¹³⁴ Cs	¹³⁷ Cs	¹³¹ I	
한일현대(영월)	불검출	6.503	불검출	114.033	불검출	50.83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국내산
한일현대(단양)	9.95	3.503	불검출	68.924	불검출	28.09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아세아(제천)	3.55	12.667	1.392	189.178	불검출	46.35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삼표(삼척)	2.08	9.186	불검출	116.935	불검출	41.49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쌍용씨엔이 (동해)	3.99	11.147	불검출	174.955	불검출	23.37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쌍용씨엔이 (영월)	1.35	17.891	불검출	112.453	불검출	불검출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성신(단양)	6.90	7.815	불검출	83.533	불검출	불검출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한일(단양)	불검출	2.780	불검출	46.252	0.067	불검출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한라(옥계)	10.51	11.317	불검출	228.486	불검출	42.03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유니온(청주)	불검출	2.254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Sumitomo Osaka	5.30	2.834	4.374	113.121	불검출	45.73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결정준위 미만	수입산 (일본)

※ Cr(VI)의 자율협약기준은 2009년부터 20 mg/kg임(일본의 시멘트업체 자율관리기준 : 20 mg/kg)
 ※ 정량한계 이하는 "불검출"로 표기하였음
 ※ 결정준위 미만 :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큼



Policy & Business
Report



V.

본회의

1. 통과 법률안 목록
2. 주요 법률안 소개

본회의 통과법률안 목록

주요법률안	소관법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노동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제2202444호

심사 진행 경과		
본회의	2024.08.05.	원안가결
본회의	2024.08.05.	정부이송

제안이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은 법률이 없더라도 헌법의 규정만으로 직접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라고 보아야 함.

그러나 간접고용이 확산되는 노동현실에서 원청의 지배를 받는 간접고용 근로자들은 노동 3권, 특히 단체교섭권에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임.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어야 단체교섭의무가 발생한다면, 원청은 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하청은 근로관계 개선 등과 관련해 실질적 권한 또는 능력이 없어 하청 근로자들은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됨. 그동안 원청과 하청의 독립적인 법인격이라는 법적 장벽 때문에 헌법상 근로자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직접적 노사관계에 있는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쟁의를 불법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음.

또한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개선과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 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불이행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법원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하여, 노동3권의 심각한 제약과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노사문제 해결을 저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법원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이들 각각의 불법행위 책임범위 여부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공동불법행위자 각각에게 총 손해발생액 전부를 부담시키고 있어, 모든 행위자 각각에 대해 과도한 배상책임이 부과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또한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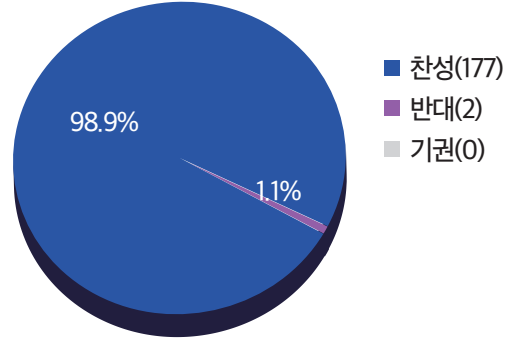
- 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2호 후단 신설).
- 나.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ILO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따르도록 함(안 제2조제4호라목 삭제).
- 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5호).
- 라.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 마.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2항 신설).
- 바. 법원이 조합원 등의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각 배상의무자별로 각각의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 사.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안 제3조제4항 신설).
- 아.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대안반영폐기 의안목록 (4건)**

- [220097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등 30인)
- [220007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4인)
- [220056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신장식의원·윤종오의원 등 87인)
- [220024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의원 등 15인)

본회의 표결 결과

- 제안 / 표결 일자 : 2024.07.31 / 2024.08.05
- 발의자 / 제안자 : 환경노동위원장
- 표결 의원 : 재석 179인 / 재적 300인
- 표결 결과 : 원안가결 179인(찬성 177인, 반대 2인, 기권 0인)



YES 찬성 (177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유정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광상언 권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선민 김성환
 김성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 윤 김윤덕 김정호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군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손명수 송기현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용혜인 우원식 위성근 위성락 유동수 윤건영 윤종근
 윤종오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현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연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명 이재정 이정문 이정현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광현 임미애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영
 정성호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 국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의원

NO 반대 (2인)

이주영 이준석 의원



별첨

1. 용어해설
2. 국회일정표

용어해설

- 제안** …… 1) 의원 발의
법률안을 발의하는 의원은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서 소정의 찬성자(발의자 포함 10인 이상)와 연서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안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되, 발의의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 2) 위원회 대안마련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안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질의·토론·축조 심사를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의결)하거나 위원의 동의(動議)로 제안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직접 심사·의결 또는 소위원회로 하여금 심사·보고하게 한 다음 의결함으로써 위원회안을 마련하게 된다.
- 회부** …… 의장이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위원회에 송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의장은 법률안이 제출되면 이를 인쇄하거나 전산망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 후 심사할 권한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 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국회법」 §81①). 또한 그 법률안의 내용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한다.
- 상정** …… 위원회에 법률안이 회부되면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의사일정을 정한다(「국회법」 §49 ②). 이 경우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후 15일(제정법률안, 전부개정법률안 및 폐지법률안은 20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는 5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국회법」 §59). 이는 의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로서 이상의 기간을 숙려기간이라 한다. 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되지 않은 의안은 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 이후 처음으로 개최하는 위원회에 자동상정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국회법」 §59의2).
- 제안설명** …… 법률안이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상정되면 제안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법률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안 취지를 설명한다. 의원발의 법률안은 발의한 의원이 1인인 경우에는 발의 의원이, 수인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자가 설명을 하며, (대표)발의자가 설명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발의자나 찬성자가 대리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검토보고** …… 의사일정에 상정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필수적이다.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소속 위원이 안건을 용이하고 능률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이유, 문제점, 이해득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작성한 보고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법률안의 위원회 상정일 48시간 전까지 소속 위원에게 배부하고 (「국회법」 §58⑧), 위원회에서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위원회제안 법률안의 경우에는 제안과정에서 전문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따로 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대체토론 ... 대체토론(general debate)이란 안건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과 당부에 관한 일반적인 토론을 말하며 제안자와 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국회법」 §58①). 안건 전체에 대한 문제점과 당부를 검토하고, 문제점의 시정을 위한 여러 가지 수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회가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반드시 대체토론이 끝난 후에 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58③). 이는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때 대체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이나 의견 등을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함으로써 전체위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는 취지이다.

질의란 안건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의문점을 물어서 밝히는 것으로 의원발의 법률안인 경우에는 제안의원 외에도 그 법률안을 소관하는 주무부처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을 출석하게 하여 집행상의 제반 문제점을 질의할 수 있다.

공청회 위원회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제정법률안이나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국회법」 §58⑥). 「국회법」은 공청회·청문회의 개최시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나, 대체토론이 끝나고 안건을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이 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축조심사 ... 축조심사란 의안을 한 조항씩 낭독하면서 심사하여 나가는 것을 말하며, 실제로는 쟁점이 있는 주요 주제별로 한 주제씩 심사를 해 나가고 있다. 안건의 내용과 심사의 정도에 따라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정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축조심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 §58⑤). 원칙적으로 축조심사는 전체회의와 소위원회에서 각각 실시되어야 하지만(「국회법」 §57⑦-§58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소위원회에서 축조심사를 마친 점을 감안하여 전체 위원회에서 간소하게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찬반토론 ... 찬반토론은 의제에 대하여 찬반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다. 토론은 소견을 개진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찬성 또는 반대의 이유와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찬반토론은 신청자가 있는 경우에 실시한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국회법」 §106).

심사보고서 ... 법제사법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국회법」 §66①).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본회의의 의제가 되지 않는 의안에 대하여도 반드시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결 표결은 위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이 의제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수를 집계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위원회에서의 표결은 본회의의 표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국회법」 §109 ~ §114의2). 표결의 방법에 있어서는 기립 표결이 통례이나 거수표결도 가능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54). 번안동의(「국회법」 §91),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국회법」 §85의2①) 및 법사위 계류법안 중 본회의의 부의요구(「국회법」 §86③)에 대한 표결을 제외하고는 특별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위원회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의제가 간단하고 특히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는 위원장이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결을 선포하는 약식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원안의결

위원회에서 의원 또는 정부가 제안한 의안을 수정 없이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는 것이다. 이는 내용상의 변경이 없음을 의미하며 문맥의 흐름을 바르게 하기 위한 단순한 자구의 변경이나 오자·탈자·한자의 한글로의 표기 등의 변경이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로 수정되어 그 내용이 심사보고서에 반영되더라도 원안의결로 본다.

2) 수정의결

의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원안의 내용·체계·형식 및 자구의 일부를 추가·삭제·변경 등을 하는 것이다.

3) 대안의결

“대안”이란 원안과 일반적으로 그 취지는 같으나 내용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거나 체계를 전연 다르게 하여 원안을 대신할 만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제출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수정안의 성격을 띤 것이다.

대안에는 위원회에서 원안이 심사되는 동안에 의원이 30인 이상의 찬성자와 연서하여 제출하는 “의원발의 대안”(「국회법」 §95④)과 위원회에서 원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원안을 폐기하고 그 원안에 대신할 만한 새로운 안을 입안하여 위원장 명의로 제출하는 “위원회제출 대안”(「국회법」 §51)이 있는데, 보통 대안이라고 하면 위원회 제출 대안을 의미한다.

4) 폐기

위원회에서 의안을 심사한 결과는 “가결”(원안, 수정)과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의 어느 것으로 의결된다. 위원회는 의안의 본회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던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하였음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있다.

우리 국회는 관례상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것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원 30인 이상이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면 그 의안은 위원회의 의결과 관계없이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러한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법률안은 확정적으로 폐기된다(「국회법」 §87).

정부이송 …… “이송”이란 국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장이 정부에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헌법 §53①, 「국회법」 §98).

공포 ……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되어 오면 법제처는 법률공포안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치면 대통령이 서명하고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공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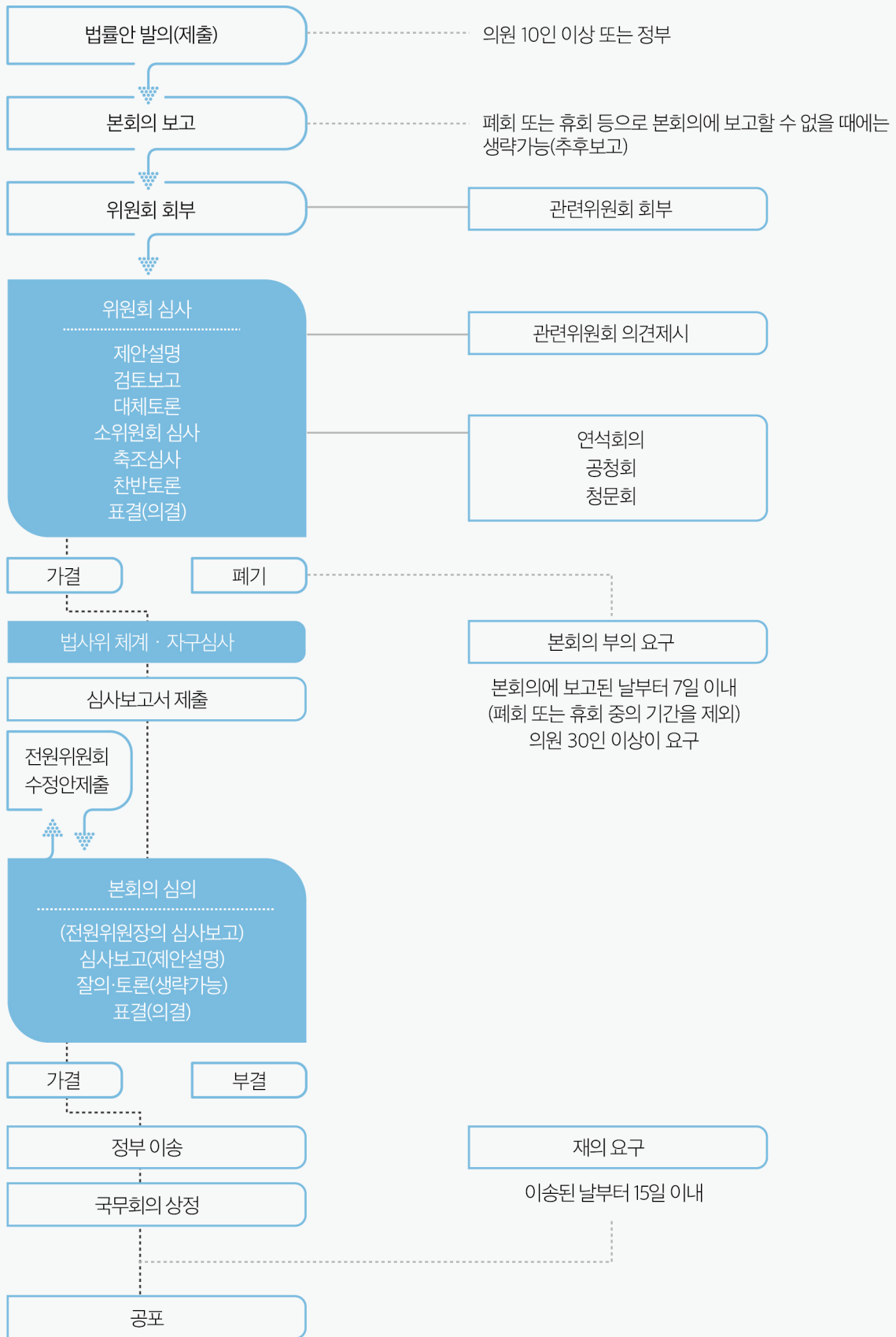


R & B

Policy & Business Report



법률안 심사절차



※ 신속처리대상안전 지정 시 소관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내 심사완료



DAERYOOK & AJU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0615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동훈타워 7-16층, 19층
www.draju.com